

<별첨 1>

< 정관 개정 사항 >

개최일자	참석 인원	주 요 의 결 사 항
2017년 11월 29일	55명	제 1호 의안 : 팔탄농협 정관 일부개정(안) 승인
2018년 02월 01일	57명	제 1호 의안 : 팔탄농협 정관 일부개정(안) 승인

2017년 제2차 임시대의원회 의결 사항

팔탄농업협동조합 정관 일부개정 사항

팔탄농업협동조합 정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대의원회) ①조합은 제40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외의 사항에 대하여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둔다.

②대의원회는 조합장을 포함한 대의원 62명(여성대의원 11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하며, 조합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조합장을 제외한 대의원의 선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1. 【구역별(영농회별) 대의원 구성표】

(단위:명)

영농회	대의원 수				영농회	대의원 수				영농회	대의원 수			
	계	일반	남성	여성		계	일반	남성	여성		계	일반	남성	여성
하저1리	2		1	1	가재2리	2		1	1	노하3리	3		2	1
하저2리	2	2			가재3리	2	2			덕천리	2	2		
하저3리	1	1			가재4리	1	1			지월리	3		2	1
하저4리	1	1			구장1리	2	2			덕우리	3		2	1
창곡1리	2		1	1	구장2리	3		2	1	서근리	2	2		
창곡2리	1	1			구장3리	1	1			월문리	2	2		
창곡3리	1	1			울암1리	2	2			화당리	1	1		
기천1리	3		2	1	울암2리	1	1			고주리	2		1	1
기천2리	2		1	1	울암3리	1	1			매곡리	2	2		
기천3리	1	1			노하1리	3		2	1	해창1리	2	2		
가재1리	2	2			노하2리	2	2			해창2리	1	1		

대의원 정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조합장을 포함한 62인(여성대의원 11인을 포함한다.)" 으로 구성한다.

2. 【대의원 정수 산출기준】

구분	기본배정 인원	추가배정인원 (대의원 구성비 기준)
대의원 정수 배정	○ 각 영농회별 조합원 수가 13인 이상인 영농회 - 2017년 10월말 최저 조합원 수 기준 영농회(가재4리) - 다만, 조합원 수가 13인 이하인 소수 영농회(가재5리)는 제외	1. 1.50 % ~ 2.49 %
		2. 2.50 % 이상이나 조합원 수가 75인 미만인 영농회
		3. 2.50 % 이상이고, 조합원 수가 75인 이상인 영농회
		주1) 선출구역별 대의원 정수 한도는 3인으로 한다. 주2) 선출구역별 대의원 정수 배분 결과 전체 대의원이 3인인 영농회에서 여성대의원 1인 의무 선출(6개 영농회) 주3) 종전 여성대의원 선출 영농회의 경우 여성대의원 1인 의무 선출(5개 영농회) 주4) 여성대의원 수는 현행 여성대의원 정수와 동일한 11인을 선출함

<선출구역(영농회)별 대의원 정수 산출근거>

(기준일 : 2017. 10. 31)

영농회	조합원 수	구성비 (백분율)	대의원 구성비	현행			개정(안)						비고
							대의원 정부배분			대의원수			
				일반	남성	여성	기본	추가	계	일반	남성	여성	
하저1리	62	3.33	2.0		1	1	1	1	2		1	1	
하저2리	69	3.71	2.3	2			1	1	2	2			
하저3리	38	2.04	1.2	1			1		1	1			
하저4리	17	0.91	0.6	1			1		1	1			
창곡1리	53	2.85	1.7		1	1	1	1	2		1	1	
창곡2리	30	1.61	1.0	1			1		1	1			
창곡3리	26	1.40	0.9	1			1		1	1			
기천1리	85	4.57	2.8	2			1	2	3		2	1	
기천2리	61	3.28	2.0		1	1	1	1	2		1	1	
기천3리	29	1.56	1.0	1			1		1	1			
가재1리	59	3.17	1.9	2			1	1	2	2			
가재2리	71	3.82	2.3		1	1	1	1	2		1	1	
가재3리	50	2.69	1.6	2			1	1	2	2			
가재4리	13	0.70	0.4	1			1		1	1			
가재5리	4	0.21	0.1						0				
구장1리	51	2.74	1.7	2			1	1	2	2			
구장2리	84	4.51	2.8		2	1	1	2	3		2	1	
구장3리	44	2.36	1.4	1			1		1	1			
울암1리	72	3.87	2.4		2	1	1	1	2	2			
울암2리	47	2.53	1.5	1			1		1	1			
울암3리	40	2.15	1.3	1			1		1	1			
노하1리	78	4.19	2.6		2	1	1	2	3		2	1	
노하2리	68	3.65	2.2	2			1	1	2	2			
노하3리	94	5.05	3.1		2	1	1	2	3		2	1	
덕천리	53	2.85	1.7	2			1	1	2	2			
지월리	98	5.27	3.2		2	1	1	2	3		2	1	
덕우리	104	5.59	3.4		2	1	1	2	3		2	1	
서근리	62	3.33	2.0	2			1	1	2	2			
월문리	73	3.92	2.4	2			1	1	2	2			
화당리	25	1.34	0.8	1			1		1	1			
고주리	53	2.85	1.7		1	1	1	1	2		1	1	
매곡리	52	2.79	1.7	2			1	1	2	2			
해창1리	68	3.65	2.2	2			1	1	2	2			
해창2리	28	1.50	0.9	1			1		1	1			
계	1,861	100.0	61.0	33	17	11	33	28	61	33	17	11	

※ 영농회별 평균 조합원수 : 54.73명 (34개 영농회 기준)

※ 현행 대의원 정수 2017.10.31. 기준 영농회별 조합원 구성비를 기준

※ 구성비 비율은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적용함

※ 남성, 여성대의원 의무선출 구역의 경우는 반드시 남성대의원, 여성대의원 선출 인원을 준수할 것

※ 일반지역으로 분류된 구역은 남녀 제한없이 정수 범위 내에서 선출이 가능함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0호와 제12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 11 현행과 동일

12.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충족하면서 "나~라"목 중 각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8,840)천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27,480)천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36,680)천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130)천원 이상

② ~ ③ 현행과 동일

<사업별 이용실적 산출자료>

(단위 : 천원)

사 업 구 분		총 사 업 이 용 액	조합원평균 이 용 액	기준금액		비 고
				요율(%)	금액	
경 제 사 업	구매	2,880,375	1,556	100%	8,840	
	판매	6,872,499	3,713			
	마트	1,811,669	979			
	가공	4,807,228	2,597			
	계	16,371,771	8,845			
예·적금		84,795,037	45,810	60%	27,480	상호금융예수금 평잔
대 출 금		135,820,772	73,377	50%	36,680	상호금융대출금 평잔
공제사업		247,717	134	100%	130	공제사업 수수료

※2016년말 현재 조합원수(1,851명)

제7편 대의원선거

제122조(자격제한 등) ① 현행과 동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선거권이 없다.

1. ~ 2. 현행과 동일

3. 선거일공고일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이용실적(선거일공고일 현재의 1년 전부터 선거일공고일 현재의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 이용한 금액)이 가목의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가목을 제외한 각목의 기준금액의 모두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2,210)천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12,366)천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16,506)천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52)천원 이상

4. 현행과 동일

부 칙(2017. 11. 29.)

제1조(시행일) ①이 정관은 2017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결격사유 중 사업이용실적에 관한 적용) 제56조제1항제12호의 각 목의 기준금액에도 불구하고 2018년 11월 28일까지는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경제사업을 이용한 금액 : (7,600)천원 이상

나. 제5조제1항제3호가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예·적금의 평균잔액 : (23,700)천원 이상

다.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신용사업 이용에 따른 대출금의 평균잔액 : (33,850)천원 이상

라. 제5조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사업 이용에 따른 수입수수료 : (90)천원 이상

제3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임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1항 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대의원의 피선거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재임중인 대의원에 대하여는 제12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팔탄농업협동조합 정관 일부개정 사항

1

농협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①조합원 제명사유 및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에 대한 제명 예외 사유 (§12)	○ 조합원 제명 사유 - 1년 이상 조합 사업 미이용 - 조합에 대한 의무 미이행 - 고의·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 야기 등 - <신 설> ○ <신 설>	○ 조합원 제명 사유 - 1년 이상 조합 사업 미이용 - 조합에 대한 의무 미이행 - 고의·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 야기 등 - 2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 ○ 2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조합원의 제명 예외 사유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기준으로 가입한 조합원인 경우 단, 가족원인 농업 종사자는 농업경영주가 '2년 이상 경제사업 미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조합이 취급하지 않는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 다른 조합·조공법인의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약정조합원의 범위 · 교육 (§14의2)	○ 약정조합원의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 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위임	○ 약정조합원의 범위, 교육, 책임, 계약의 체결·이행의 확인 및 우대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위임	
③상임감사 의무도입 대상 (제5편 비고5)	○ <신 설>	○ '17.12.28. 이후 감사를 선출하는 조합으로서 감사의 임기개시일 전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조합은 새로운 감사 선출 전에 상임감사를 두는 것으로 정관을 변경하여야 함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⑤상임감사 자격요건 (§119) (품목§117)	◦ 조합 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u><단서 신설></u> ◦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 <u>중앙회</u>·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 및 은행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 조합 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u>단, 우리조합에서 최근 2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감사로 근무 중이거나 근무한 사람은 제외)은 제외</u> ◦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 <u>중앙회(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u>·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 및 「<u>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 <u>검사 대상기관</u>에서 감사 관련 업무 등 또는 조합 관련 업무에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⑥조합의 경제사업 기준 (§138, 143) (품목§136, 141)	◦ <u><신 설></u> ◦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공고 - 중앙회장이 조합의 <u>경영상태 평가결과</u>에 따라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등	◦ <u>조합은 경제사업 기준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에 명시하여야 하고, 매출액 등 경제사업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u> ◦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공고 - 중앙회장이 조합의 <u>경영상태 및 경제사업 기준 이행현황 평가결과</u>에 따라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경우 등	
⑦조합의 위탁사업 및 공동사업 대상(§5)	◦ 위탁사업 대상 -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u>농협은행</u>, 다른 조합 ◦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 대상 - 중앙회, <u>경제지주</u>, 다른 조합	◦ 위탁사업 대상 -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u>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u>, 농협은행, 다른 조합 ◦ 공동사업 및 대리 업무 대상 - 중앙회, <u>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u>,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다른 조합	
⑧농·축산물 판매활성화 관련 (§5의2)	○ 공동사업 추진 대상 - 다른 조합, <u>중앙회</u> ○ 농산물 판매위탁 요청 대상 - <u>중앙회, 경제지주</u>	○ 공동사업 추진 대상 - 다른 조합, <u>중앙회, 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u> ○ 농산물 판매위탁 요청 대상 - <u>경제지주 및 그 자회사</u>	
⑨성년후견 제도 관련 용어 변경 (§11, 56)	○ <u>금치산선고</u> ○ <u>금치산자·한정치산자</u>	○ <u>성년후견개시의 심판</u> ○ <u>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u>	
⑩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인정 사유 (§11)	○ <신 설> ○ <신 설> ○ <신 설>	○ <u>조합원 자격요건인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가능한 사유</u> - <u>농·축산업 경영에 사용되는 토지·건물 등 시설물의 수용 및 일시적인 매매</u> - <u>가축의 일시적인 매매 및 가축의 살처분</u> - <u>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인의 범위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u> ○ <u>조합원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조합원 자격 유무 확인 시 적용</u> ○ <u>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적용 불가</u>	
⑪우선출자 발행 제한 대상(§21)	○ 다른 조합, 조공법인, 연합회, <u>중앙회</u>	○ 다른 조합, 조공법인, 연합회, <u>중앙회 (자회사 및 손자회사)</u>	
⑫조합원인 이·감사 선거운동 방법 등 (§101의2) (품목§99의2)	○ 선거운동 방법 - 선거공보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신 설>	○ 선거운동 방법 - 선거공보 - <u>전화(문자메시지 포함)·컴퓨터 통신(전자우편 포함)을 이용한 지 지 호소</u> ○ <u>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가능</u> ○ <u>조합의 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 등에서 정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정보가 조합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시된 경우 관리·운영자에게 삭제요청 가능하며, 관리·운영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u> ○ <u>정보가 삭제된 경우 게시자는 삭제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 가능</u>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 <신 설>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심의 후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⑬상임이사 자격요건 (§112) (품목§110)	○ 조합 등 및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 또는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등	○ 조합 등 및 중앙회(자회사 및 손자회사 포함)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 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등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사 대상기관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 등	
⑭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 서류 (§10, 16)	○ 법인의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 법인의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 법인의 명칭·법인등록번호·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u>생년월일</u> ·주소	
⑮기타 조문 정비 (§52)	○ 비상임 조합장 의무선출 규정 - 농협법 제45조제3항	○ 비상임 조합장 의무선출 규정 - 농협법 제45조제4항	

2

제도개선 사항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①대의원 결격사유 (§46)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 금치산자, <u>한정치산자</u>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자격 <u>상실·정지된 사람</u>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미성년자, <u>피성년후견인</u> , <u>피한정후견인</u>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삭 제>	
②임원의 정수 (§51)	○ 임원의 정수 - 조합에 임원으로서 조합장 <u>1명을 포함한 이사 ○명과</u> <u>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u>	○ 임원의 정수 - 조합장 : 1명 - 조합원인 이사 : ○명 - 조합원이 아닌 이사 : ○명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조합장은 상임으로 하며 이 사 중 ○명은 조합원이어야 한다.</u>	- <u>감사(상임감사 ○명 포함) : 2 명</u>	
③조합장 선거 관련 규정 명확화 (§77의10Ⅱ, 77의14) (품목 §75의10Ⅱ, 75의14)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대 상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제1호에 규 정된 행위 ○사위투표 금지 - 성명 사칭 등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할 수 없음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 대 상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 사퇴를 목적으로 후보자 등에게 제1호에 규 정된 <u>이익이나 직을 제 공·제공의사표시·제공약속 하는 행위</u> ○사위투표 금지 - 성명 사칭 등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u>하려고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게 할 수 없음</u>	
④조합원인 이사의 선거방법 (§101) (품목§99)	○성별로 배분하여 선출 (비고)여성조합원이 전체 조 합원의 30% 이상인 경우 - <신 설>	○성별로 배분하여 선출 (비고)여성조합원이 전체 조 합원의 30% 이상인 <u>경우로서 성별로 배분하여 이사를 선출 하는 경우</u> ○ <u>전체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와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 출하는 이사로 구분하여 선출</u>	
⑤대의원 자격제한 등 (§122) (품목§120)	○대의원 자격 - <u>대의원 임기만료일 전 180일까 지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 으로서, 선거공고일 현재 6 개월 이상 해당 선출구역 조 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u> ○경제사업 이용실적 기준 - 경제(구·판매)사업 이용금액 (의무)	○대의원 자격 - <u>선거일공고일 현재</u> 해당 선 출구역 조합원명부에 등재된 사람 ○경제사업 이용실적 기준 - 경제(구·판매)사업 이용금액	

항 목	현 행	개 정 (안)	비 고
	<u><신 설></u>	(의무) (조합이 출자한 조공법인의 판매사업 이용 금액 포함)	
⑥대의원 선거 방법 (§131) (품목§129)	○ 후보자 기호 부여 방법 - 성명의 가,나,다 순 - <u><신 설></u> ○ 투표 시간 - 위원회가 정하는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각까지	○ 후보자 기호 부여 방법 - 성명의 가,나,다 순 - <u>후보자 간 추천</u> (비고) 후보자의 기호를 추천에 따른 기호 순에 의하는 경우 ○ 투표 시간 - <u>조합장 또는 위원회</u>가 정하는 시작시간부터 종료시각까지	
⑦운영의 공개 (§140의2) (품목 §138의2)	○ 홈페이지(운영조합에 한정) 게시 대상 - 3·6·9월말 사업보고서 - <u>정관 변경 사항</u> ○ 열람·사본 청구 대상 서류 - 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조합원 한정) - 정관 - 결산보고서 - <u><신 설></u>	○ 홈페이지(운영조합에 한정) 게시 대상 - 3·6·9월말 사업보고서 - <u>정관</u> ○ 열람·사본 청구 대상 서류 - 총회 의사록 - 이사회 의사록(조합원 한정) - 정관 - 결산보고서 - <u>규약(조합원 한정)</u>	
⑧선거 구비서류 명확화 (별표 주2)	○ <u>동시조합장선거</u>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	○ 「 <u>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조합장선거 및 대의원선거의 경우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구비서류에서 제외	